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가단512885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

##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필로스

담당변호사 김학민

4. D

소송대리인 E

**변론 종결** 2021. 10. 22.

**판결 선고** 2021. 11. 5.

##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960,045원 및 그 중 169,108,763원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2020. 7. 31.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57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6. 28. 접수 제693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3 목록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9.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2019. 11. 6.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그에 따른 대출 실행

- 1) 원고는 2014. 1.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195,500,000원, 보증기한 2015. 1. 19.까지(이후 보증기한을 2020. 3. 16.까지로 변경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피고 회사는 2014. 1. 2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나.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 등

- 1) 피고 회사는 2020. 1. 21.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F은행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4. 27. F은행에게 169,108,763원(= 원금 165,600,000원 + 이자 3,508,7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의 2020. 4. 27.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2,330,442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보증기한 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위약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20. 3. 17.부터 2020. 4. 26.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미수위약금은 520,840원이다.

#### **다.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은 2019. 5. 31.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G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57152호)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2019. 6. 28.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H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2019. 5.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6. 28. 접수 제69381호)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라. 피고 D의 건설기계 매수**

피고 B은 2019. 10. 31. 피고 D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1. 6. 피고 D 앞으로 건설기계소유권변경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록'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171,960,045원(= 대위변제금 169,108,763원 + 채권보전비용 2,330,442원 + 미수 위약금 520,840원) 및 그 중 169,108,763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0.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7. 31.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4. 27.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5. 31. 이후인 2020. 4. 27. F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9. 5. 1.부터 2020. 4. 27.까지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다.

③ 피고 회사는 2018. 3. 8. 부과된 세금 20,460,410원을 체납하기 시작하여 2020. 3.경까지 체납된 세금의 합계가 80,000,000원이 넘었으며, 2020. 1.경 F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의 무자력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이 법원은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5. 31.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의 합계는 2,031,446,400원이며(피고 B이 이혼하면서

2019. 1. 14. K에게 재산분할 하여 준 부동산은 2019. 5. 31. 재산분할이 완료되어 피고 B 소유가

아니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합계는 2,877,161,016원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                                 |                |
|---|---------------------------------|----------------|
| 1 | H호                              | 830,000,000원   |
| 2 | G호                              | 492,000,000원   |
| 3 | 과천시 L대 194㎡ 중 1,774분의 591.5 지분  | 273,596,400원   |
| 4 | 과천시 M 대 837㎡ 중 1,774분의 591.5 지분 | 348,850,000원   |
| 5 | N건물 O호                          | 21,000,000원    |
| 6 | N건물 P호                          | 21,000,000원    |
| 7 | 별지3 건설기계                        | 45,000,000원    |
| 8 | 합계                              | 2,031,446,400원 |

|    |     |              |
|----|-----|--------------|
| 1  | Q   | 500,000,000원 |
| 2  | R   | 180,000,000원 |
| 3  | F은행 | 42,574,036원  |
| 4  | S   | 118,256,785원 |
| 5  | 원고  | 171,960,045원 |
| 6  | C   | 281,370,150원 |
| 7  | T   | 350,000,000원 |
| 8  | U   | 253,000,000원 |
| 9  | V   | 330,000,000원 |
| 10 | W   | 50,000,000원  |

|    |    |                |
|----|----|----------------|
| 1  | Q  | 500,000,000원   |
| 11 | 은행 | 600,000,000원   |
|    | 합계 | 2,877,161,016원 |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그 소유 부동산인 G호와 H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은 피고 C에게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피고 B의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던지, 이러한 행위로 피고 B이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C은 2000년대 초반부터 피고 B과 금전거래를 해 왔고, 피고 B이 소유하였던 재산의 규모, 경력에 비추어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7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피고 B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 1652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피고 C과 피고 B이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 온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증인 X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4. 27.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10. 31. 이후인 2020. 4. 27. F은행에 대위변제 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20. 1.경 발생하였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10. 31. 시가 합계 2,044,142,800원(위 표1 순번 3: 280,711,200원, 순번 4: 354,431,600원만 변경)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 합계는 2,877,161,016원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피고 D에게 대물변제조로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 주었는바, 피고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 다. 피고 D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 D의 부 E이 피고 B에

대하여 건설기계 수리비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올라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9. 8. 24. 피고 D의 부 E의 소개로 Y으로부터 15,000,000원을 월 4%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E이 대위변제하게 되었고,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과 기존 수리비채권을 45,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은 피고 B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올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미정**

별지